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6. 6. 7.

개정 2017. 4. 4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, 자문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협회”란 「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」를 말한다.
2. “신청인”이란 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·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자문결과서”란 별지 제3호 서식의 「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결과서」를 말한다.

제3조 (구성) ① 자문위원회는 80인 이내(위원장 제외)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자문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자문위원회의 회장(이하“회장”이라 한다.) 및 부회장(이하“부회장”이라 한다.)은 협회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각 방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 (운영 및 자문대상) ① 자문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 11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한다. 다만, 시 또는

구·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,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 및 농업용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4.4.>

1.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
 2. 1호 이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② 자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계획, 구조 및 생활안전, 에너지 성능, 방재, 범죄예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·자문한다.
-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회 개최)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 건수가 5건 이상이 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회의는 전체 위원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최하되, 제3조 제1항에 따른 추가위원을 출석토록 하여 자문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자문결과를 승인한다.
- ⑤ 위원장은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, 부위원장 및 위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 (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협회 임원 임기에 따른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협회 회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 (자문신청)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(이하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인터넷 등으로 (전자문서 등으로)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위치도 및 현황사진, 배치도, 실내재료마감표, 각층 평면도, 입면도 4면[1면(정면도) 이상 채색], 계단단면도 및 중/횡단면도, 창호도 등에 자문적용사항을 표현한 설계도서를 이미지 파일(JPG, JPEG)로 제출
2. 건축물 설계계약서 사본

3.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자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도서

제8조 (자문결과 등) ① 회장은 자문 종료 후 신청인에게 자문결과를 통보하고, 신청인은 허가권자에게 “자문결과서”와 함께 자문을 득한 도서를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자문의 결과가 “보완”일 경우 신청인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매회 자문 건축물 중에서 우수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으며, 회장은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우수건축물의 신청인에게 추천결과를 통지하고,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건축물(이하 “인증건축물”이라 한다.) 인증절차에 대해 안내한다.

제9조 (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건축물) ① 회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건축물 중 인증건축물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인증건축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도서 및 최근 건축물의 사진(부분별 사진 포함) 등을 첨부하여 신청기간 중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건축물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한다.

③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증건축물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.

제10조 (도서의 제공 등) 설계자(또는 신청인)는 감리자 및 사용승인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게 자문결과의 이행을 위한 각종 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설계변경 등) ① 신청인은 자문을 통과한 건축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건축법에 따른 설계 변경 허가 대상일 때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개정 2017.4.4.>

제12조 (운영회비) 협회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, 사무비 등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를 받을 수 있다.

<개정 2017.4.4.>

제13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와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등을 준용한다.

제14조 (운영 세칙) 협회는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5조 (규정의 제·개정) 회장은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 <2016.6.7. 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자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17.4.4.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보완사항 통보서

- 자문일자 : 년 월 일
- 대지위치 :
- 건축주 :
- 설계자 :

보완사항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.
- 2.
- 3.
- 4.
- 5.

※ 비 고

기타 자문위원회의 의견 기재

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자문 결과를 통보하오니, 보완사항 이행 후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(직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결과서

- 자문일자 : 년 월 일
- 대지위치 :
- 연 면 적 : m²
- 층 수 : 지하 층 / 지상 층
- 용도/구조 : /
- 건 축 주 :
- 설 계 자 :

자 문 결 과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음.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우수건축물 추천 대상

대 상 / 비대상

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자문 결과를 통보합니다.

20 . . .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(직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건축물 인증신청서

1. 건축물 개요

건 물 명	※ 건물명이 없을 경우 건축주에게 문의 후 작성 할 것		
지역·지구			
대 지 위 치			
건축 허가일	사용승인일		
대 지 면 적	m ²		
건 축 면 적	m ²	건 폐 율	%
연 면 적	m ²	용 적 율	%
구조 및 층수	용 도		
주 차 대 수	대 (법적 : 대 이상)		
조 경 면 적	m ² (법적 : m ² 이상)		
외 장 재 료			
기타 특기사항 :			

2. 건축관계자 개요

구 분	상호 또는 주소	성 명	전화번호	비 고
설계자	※ 1인 이상일 경우 전부 및 정확하게 작성할 것		※ 연락 가능한 번호	
감리자	”		”	
시공자	”		”	
건축주	”		”	

3. 첨부서류

: 사용승인 도서 및 최근 건축물의 사진(부분별 사진 포함), 조감도 등 첨부

20 . . .

신 청 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귀하